
영 상 정 보 처 리 기 기 설 치 · 운 영 지 침

2017.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카메라) 설치·운영 및 개인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6.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

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한다.

②제1항의 설치목적은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③개인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하도록 노력한다.

④개인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제5조(책임관 지정) ①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본부장으로 하며, 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한다.

③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열람·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설치목적에 따라 부서별 별도의 책임관 등을 따로 둘 수 있으며 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 운영 관리한다.

제6조(사전의견 수렴) ①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시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개인영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안내판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③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④안내판의 크기는 별첨 1과 같으며, 기타 장소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부서별 책임관이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집의 제한)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 촬영범위 외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개인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개인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열람·제공 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관 및 파기) ①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파기)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1호)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1호)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2조(정보주체의 권리) ①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3장 보 칙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유지·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내용과 크기

CCTV 설치 안내	
목적	시설안전,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예방 등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녹화
촬영범위	경륜장 건물 내·외부
책임관	발매안전P/L, (051)550-1583

(가로 : 36cm, 세로 : 22cm)